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21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 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정함 (안 제3조)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
단,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나.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원
단,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

- * 첫째아 1회 100만원
- * 둘째아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 * 셋째아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 * 넷째아 이상은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

다.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를 정함 (안 제5조~제6조)

-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라. 지원금의 환수 (안 제7조)

-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2012년 당초예산 100백만원 요구하였음.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1.10.26. ~ 11.15.(20일간), 제출의견 2건

(제출의견 검토 후 조례 반영하였음 - 붙임참조)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아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 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출생순위”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②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4. 넷째아 이상은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축하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의 사실여부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와 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신청대장과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검토·반영

I. 입법예고 결과

-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1 - 596호
- 공고기간 : 2011. 10. 26. ~ 11. 15.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계시판 공고
- 제출의견 : 2건

【 의견 1 】

1.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위해 제3조(지원대상)의 거주기간 6개월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2. 제4조(지원기준)의 장려금을 현금보다는 군 재정을 고려하여 전 군민을 위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 지역과 차별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 진부면 -

【 의견 2 】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별지 1~3호 서식)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6조, 제22조~24조에 의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해야 함.

- 자치행정과 -

II.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반영

구 분	검토의견	반 영
<p>【의견 1】</p>	<p>「안건 1」 << 의견반영 >></p> <p>☞ 타 시군에 비해 파격적인 장려금 지원기준에 따른 일시전입 등 원정출산이 우려되어 지원기준을 강화하고자 함.</p> <p>※ 지역주민에게는 영향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변경내용 -</p> <p>【제3조(지원대상)】</p> <p>* 거주기간 6개월 ⇒ 2년</p> <p>* 부 또는 모 ⇒ 부모</p> <p>【제4조(지원기준)】</p> <p>* 명확한 지원기준을 위해 <u>“1인당 100만원씩을” “각 호와”</u> 추가</p> <p>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월 100만원 1회 지급 ⇒분기 50만원 2회 지급</p> <p>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월 100만원 2회 지급 ⇒분기 50만원 4회 지급</p> <p>4. 넷째아이상은 1회 100만원과 월 1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p>	<p>제3조(지원대상) 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u>2년</u>전부터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u>부모</u>로 한다. 단, 신생아, 입양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u>2년</u>미만인 경우에는 <u>2년</u>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p> <p>제4조(지원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u>1인당 100만원씩을</u> 다음 <u>각 호와</u> 같이 지원한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p> <p>1. 첫째아 : 1회 100만원</p> <p>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u>분기 50만원 2회</u> 지급</p> <p>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u>분기 50만원 4회</u> 지급</p> <p>4. 넷째아이상은 1회 100만원과 <u>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u> 한다.</p>

구 분	검토의견	반 영
	<p>「안전 2」 << 미반영 >></p> <p>☞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 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장려금을 보육료로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p>	
<p>【의견 2】</p>	<p><< 의견반영 >></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의무 조항 명시</p>	<p>제5조(지원신청) ③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u>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p> <p>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1부 2. <u>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u> 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기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부모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

【지원기준】

-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하며,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별로 각각 지원

※ 재혼, 입양아인 경우 포함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 출생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

【지원방법】

- 출산축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일시 전입하거나, 축하금 수령 후 전출 등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둘째아부터 기본금액(100만원) 지원 후 추가 금액은 분기 단위 분할 지급

- ▶ 첫째아 : 1회 100만원
- ▶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 ▶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 ▶ 넷째아 이상 : 출생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며, 분기 단위 분할 지급

【소요예산】

○ 출산축하금: 400백만원 (균비)

○ 산출기초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출생아별				
	합계 (지원액)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이상 (400만원)
출생아(2010년)	239	106	99	32	2
소요예산	408	106	198	96	8
출생아(2011년) ※ 10월말 기준	214	93	87	28	6

【기대효과】

- 저출산 고령화 극복으로 인구늘리기와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
- 자녀출산·양육 지원으로 군민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군정 실현

나. 추계 결과 : 40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담당 박금옥
연락처	330 - 230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521,280	586,440	651,600	716,760	781,920	3,258,000	
보통교부세 (1인 2,172천원)	521,280	586,440	651,600	716,760	781,920	3,258,000	
	240명	270명	300명	330명	360명	1,500명	
세 출	400,000	450,000	500,000	550,000	600,000	2,500,000	
출산축하금	400,000	450,000	500,000	550,000	600,000	2,500,000	
재원 조달	400,000	450,000	500,000	550,000	600,000	2,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0,000	450,000	500,000	550,000	600,000	2,500,000
	지방세	400,000	450,000	500,000	550,000	600,000	2,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1인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으로만 산정(기초수요 반영, 보정수요 제외)

⇒ 인구수로 산출가능한 부분 위주 산정 금액임.

관계법령 발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정의)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